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8.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도하석 의원 등 8명(이선주, 박종길, 서보영, 정순옥, 이진환, 손범구, 이영빈)
- 발의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상정 및 의결: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2024. 11. 28.)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국민운동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국민운동조직의 육성·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국민운동조직 육성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및 회원의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4. 11. 6. ~ 11. 17.)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추진해 오던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대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 국민운동조직 현황

구 분	설립일자	하부조직(洞)
대구광역시달서구새마을회	1988. 3. 5.	협의회 21 부녀회 23
바르게살기운동달서구협의회	1989. 4. 1.	위원회 23
한국자유총연맹달서구지회	1989. 4. 17.	위원회 19

- 주요 내용으로 우리구가 이미 시행 중인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중복지원 금지와 예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운동조직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한 이견이 없음.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